

※ 본 안내문은 오픈 전 참고용으로 향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내용은 청약자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므로 청약 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라며 청약자의 과실로 인한 낙점 및 부적격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구분	내용						
신청자격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p> <p>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p> <p>②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p> <p>* [1인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 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60㎡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 가능</p> <p>③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이상 소득세 납부한자</p> <p>※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p> <p>※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한 자를 포함</p> <p>④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p> <p>※ 혼인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가 없는 신청자 중 주민등록등본 상 부양가족이 있는 신청자는 면적 구분없이 추첨제 청약 가능</p> <p>※ 당 사업자는 전세대 전용 60㎡ 초과 주택형을 공급하므로 미혼이면서 1인 단독세대는 청약이 불가합니다.</p> <p>-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입주자 모집공고일</th> <th>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기준</th> <th>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기준</th> </tr> <tr> <td>(예정)</td> <td>전년도 소득</td> <td>전년도 소득</td> </tr> </table> <p>-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 기준(3억 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p> <p>※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기준 85㎡이하 타입만 신청 가능합니다.</p> <p>※ 2023.11.1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의거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에 해당되어 특별공급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p>	입주자 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기준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기준	(예정)	전년도 소득	전년도 소득
	입주자 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기준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기준				
(예정)	전년도 소득	전년도 소득					
청약통장 가입요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방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공급기준</td> <td> <p>① 우선공급(50%)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기준의 130% 이하인 자</p> <p>② 일반공급(20%)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의 160% 이하인 자</p> <p>③ 추첨공급(30%) : 공급 후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p> </td> </tr> <tr> <td>경쟁 시 우선순위</td> <td>※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청주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공급기준	<p>① 우선공급(50%)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기준의 130% 이하인 자</p> <p>② 일반공급(20%)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의 160% 이하인 자</p> <p>③ 추첨공급(30%) : 공급 후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p>	경쟁 시 우선순위	※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청주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
	구분	내용					
공급기준	<p>① 우선공급(50%)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기준의 130% 이하인 자</p> <p>② 일반공급(20%)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의 160% 이하인 자</p> <p>③ 추첨공급(30%) : 공급 후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p>						
경쟁 시 우선순위	※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청주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						

구분	내용								
소득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2023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130% 이하	~ 8,462,288원	~ 10,452,640원	~ 8,040,492원	~ 11,312,131원	~ 12,171,622원	~ 13,031,113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130% 초과 ~ 160% 이하	8,462,289원 ~ 10,415,123원	9,908,674원 ~ 12,195,290원	10,452,641원 ~ 12,864,787원	11,312,132원 ~ 13,922,622원	12,171,623원 ~ 14,980,458원	13,031,114원 ~ 16,038,293원
	추첨제 (30%)	소득기준 초과 자산 기준 충족	160% 초과, 부동산가액 (3.31억원) 충족	10,415,124원 ~	12,195,291원 ~	12,864,788원 ~	13,922,623원 ~	14,980,459원 ~	16,038,294원 ~
		1인 가구	160% 이하	~ 10,415,123원	~ 12,195,290원	~ 12,864,787원	~ 13,922,622원	~ 14,980,458원	~ 16,038,293원
	140% 초과, 부동산가액 (3.31억원) 충족		10,415,124원 ~	12,195,291원 ~	12,864,788원 ~	13,922,623원 ~	14,980,459원 ~	16,038,294원 ~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160%)는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 + 토지)	3.31억원 이하	건축물	<p>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p> <table border="1"> <thead> <tr> <th>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자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